

#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안내
  - 래미안 라그란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관리를 홈페이지(<https://www.raemian.co.kr>)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건본주택 관리는 23.8.11일(금)~8.15일(화)까지 5일간 운영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함**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당첨자 본인이 래미안 라그란데 홈페이지(<https://www.raemian.co.kr>)를 통해 방문일자 및 시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임)
  - 래미안 라그란데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예약가능 대상자 여부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의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임
- 래미안 라그란데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램.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 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램**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8.04(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은「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됨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램**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램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함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1순위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 할 수 없음.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음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지역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이 아닌 기타지역(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봄]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음.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를 해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raemia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퍼센트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퍼센트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신고를 의무화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음 (※ 단,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준일	기간	관련 법령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	1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 5호 가목의 1)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음. 다만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음

또한 「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이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하여야 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 등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임.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함)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08월 14일(월)	08월 16일(수)	08월 17일(목)	08월 23일(수)	08월 26일(토) ~ 08월 29일(화)	09월 03일(일) ~ 09월 06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별도 안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라미안갤러리 3층)</li> <li>*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고,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8665호(2023.08.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세대[조합 1,608세대(보류지 15세대 포함), 임대 541세대] 중 일반분양 920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9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87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7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9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1.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382	01	052.9800	52	52.9800	19.9400	72.9200	54.1300	127.0500	32.4000	45	5	2	8	1	8	24	21	8
		02	055.9900	55	55.9900	20.9200	76.9100	57.2100	134.1200	34.1700	173	17	6	31	5	26	85	88	22
		03	059.9500A	59A_1	59.9500	21.8800	81.8300	61.2500	143.0800	36.3600	267	27	9	66	8	24	134	133	48
				59A_2	59.9500	20.0100	79.9600	43.2800	123.2400	26.8800									
		04	059.9800B	59B	59.9800	22.5800	82.5600	61.2800	143.8400	36.6800	110	11	4	27	3	10	55	55	13
		05	059.9500C	59C	59.9500	21.8800	81.8300	61.2500	143.0800	36.3600	2	-	-	-	-	-	-	2	0
		06	074.9800A	74A	74.9800	25.8800	100.8600	76.6100	177.4700	44.8100	39	4	4	7	1	4	20	19	9
		07	074.9900B	74B	74.9900	27.0800	102.0700	76.6200	178.6900	45.3500	9	1	1	2	-	-	4	5	2
		08	074.9900C	74C	74.9900	24.3700	99.3600	54.1300	153.4900	33.4000	75	7	8	14	2	7	38	37	8
		09	084.9700A	84A_1	84.9700	29.2200	114.1900	86.8200	201.0100	50.7400	140	14	14	25	5	12	70	70	30
				84A_2	84.9700	26.5800	111.5500	61.3400	172.8800	37.5000									
		10	084.9900B	84B	84.9900	27.9900	112.9800	61.3500	174.3300	37.9800	39	4	4	7	2	4	21	18	9
		11	084.9700C	84C	84.9700	29.2200	114.1900	86.8200	201.0100	50.7400	3	-	-	-	-	-	-	3	0
12	099.9800	99	99.9800	31.1500	131.1300	72.1700	203.3000	44.0800	10	-	1	-	-	-	1	9	2		
13	114.9800	114	114.9800	38.2600	153.2400	117.4800	270.7200	68.0900	8	-	-	-	-	-	-	8	2		
합계											920	90	53	187	27	95	452	468	153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총 2개 단지로 구성되며, 주택형별 단지 위치, 단지 구분, 단지별 주변여건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 중 복수의 단지에 공급하는 주택형(059.9500A, 084.9700A)의 경우 특정단지 선택 청약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059.9500A, 084.9700A 주택형 약식표기 후단의 "\_1", "\_2" 부기 표기는 단지 표기이며,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주거공용면적 등의 차이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총 공급세대수 중 주택형 059.9500A는 59A\_1(1단지) 237세대, 59A\_2(2단지) 30세대, 주택형 084.9700A는 84A\_1(1단지) 67세대, 84A\_2(2단지) 73세대임

※ 상기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153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920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임

※ 평형 환산 방법: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획지별로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획지별 주택공급면적이 차이가 있으며,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소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되, 추후 확정측량에 의거 대지면적 변경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울시 인·허가 기준에 따른 발코니 변화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 내용 및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동·라인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 차	2 차	1 차(15%)	2 차(15%)	3 차(15%)	4 차(15%)	입주 지정일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0 일 이내	23.12.12	24.03.12	24.06.12	24.09.12	
052.9800	113 동 3, 4 호 114 동 3, 4 호 117 동 1, 2, 3, 4 호	1 층	4	308,014,000	377,986,000	686,000,000	30,000,000	38,600,000	102,900,000	102,900,000	102,900,000	102,900,000	205,800,000
		2 층	8	318,341,000	390,659,000	709,000,000	30,000,000	40,90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106,350,000	212,700,000
		3-4 층	16	325,076,000	398,924,000	724,000,000	30,000,000	42,4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108,600,000	217,200,000
		5-9 층	15	331,811,000	407,189,000	739,000,000	30,000,000	43,900,000	110,850,000	110,850,000	110,850,000	110,850,000	221,700,000
		10 층 이상	2	334,954,000	411,046,000	746,000,000	30,000,000	44,600,000	111,900,000	111,900,000	111,900,000	111,900,000	223,800,000
055.9900	111, 118 동 4, 5 호 113, 114, 124 동 1, 2 호 120 동 3, 4 호 121, 122 동 1, 2, 3, 4 호	1 층	14	338,097,000	414,903,000	753,000,000	30,000,000	45,300,000	112,950,000	112,950,000	112,950,000	112,950,000	225,900,000
		2 층	20	348,873,000	428,127,000	777,000,000	30,000,000	47,70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233,100,000
		3-4 층	39	356,057,000	436,943,000	793,000,000	30,000,000	49,300,000	118,950,000	118,950,000	118,950,000	118,950,000	237,900,000
		5-9 층	74	363,690,000	446,310,000	810,000,000	30,000,000	51,0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243,000,000
		10 층 이상	17	367,282,000	450,718,000	818,000,000	30,000,000	51,800,000	122,700,000	122,700,000	122,700,000	122,700,000	245,400,000
	126 동 1, 2 호	1 층	1	327,770,000	402,230,000	730,000,000	30,000,000	43,000,000	109,500,000	109,500,000	109,500,000	109,500,000	219,000,000
		2 층	2	338,546,000	415,454,000	754,000,000	30,000,000	45,4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226,200,000
		3-4 층	4	345,730,000	424,270,000	770,000,000	30,000,000	47,000,000	115,500,000	115,500,000	115,500,000	115,500,000	231,000,000
		5 층	2	352,914,000	433,086,000	786,000,000	30,000,000	48,600,000	117,900,000	117,900,000	117,900,000	117,900,000	235,800,000
059.9500A	101 동 2, 3, 4 호 103 동 1, 2, 3, 4, 5 호	1 층	21	363,241,000	445,759,000	809,000,000	30,000,000	50,900,000	121,350,000	121,350,000	121,350,000	121,350,000	242,700,000

	105 동 9 호 106 동 2, 3, 5 호 107 동 7 호 108, 109 동 8 호 111 동 3 호 112, 116 동 1, 2, 3, 4 호 118 동 1, 3 호 119, 211 동 4, 5 호 120, 208 동 1, 2 호 127, 128 동 1 호 203, 206 동 3, 4 호	2 층	39	374,915,000	460,085,000	835,000,000	30,000,000	53,500,000	125,250,000	125,250,000	125,250,000	125,250,000	250,500,000
		3-4 층	74	382,997,000	470,003,000	853,000,000	30,000,000	55,300,000	127,950,000	127,950,000	127,950,000	127,950,000	255,900,000
		5-9 층	47	390,630,000	479,370,000	870,000,000	30,000,000	57,0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261,000,000
		10-19 층	31	394,671,000	484,329,000	879,000,000	30,000,000	57,900,000	131,850,000	131,850,000	131,850,000	131,850,000	263,700,000
		20 층 이상	7	398,712,000	489,288,000	888,000,000	30,000,000	58,800,000	133,200,000	133,200,000	133,200,000	133,200,000	266,400,000
	111 동 1 호 127 동 3, 4, 5, 6 호 128 동 3, 4, 5 호	1 층	8	352,016,000	431,984,000	784,000,000	30,000,000	48,4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117,600,000	235,200,000
		2 층	8	363,690,000	446,310,000	810,000,000	30,000,000	51,0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121,500,000	243,000,000
		3-4 층	16	371,323,000	455,677,000	827,000,000	30,000,000	52,70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248,100,000
		5-9 층	13	378,956,000	465,044,000	844,000,000	30,000,000	54,4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253,200,000
		10 층 이상	3	382,997,000	470,003,000	853,000,000	30,000,000	55,300,000	127,950,000	127,950,000	127,950,000	127,950,000	255,900,000
059.9800B	101 동 1 호 103 동 6 호 105 동 10 호 106 동 1, 4, 6 호 107 동 8 호 108, 109 동 9 호 118, 127, 128 동 2 호	1 층	3	359,649,000	441,351,000	801,000,000	30,000,000	50,100,000	120,150,000	120,150,000	120,150,000	120,150,000	240,300,000
		2 층	11	371,323,000	455,677,000	827,000,000	30,000,000	52,70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124,050,000	248,100,000
		3-4 층	24	378,956,000	465,044,000	844,000,000	30,000,000	54,4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253,200,000
		5-9 층	24	387,038,000	474,962,000	862,000,000	30,000,000	56,200,000	129,300,000	129,300,000	129,300,000	129,300,000	258,600,000
		10-19 층	29	390,630,000	479,370,000	870,000,000	30,000,000	57,0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261,000,000
		20 층 이상	7	394,671,000	484,329,000	879,000,000	30,000,000	57,900,000	131,850,000	131,850,000	131,850,000	131,850,000	263,700,000
	111 동 2 호	1 층	1	348,873,000	428,127,000	777,000,000	30,000,000	47,70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116,550,000	233,100,000
		2 층	1	360,098,000	441,902,000	802,000,000	30,000,000	50,200,000	120,300,000	120,300,000	120,300,000	120,300,000	240,600,000
		3-4 층	2	367,731,000	451,269,000	819,000,000	30,000,000	51,900,000	122,850,000	122,850,000	122,850,000	122,850,000	245,700,000
		5-9 층	5	375,364,000	460,636,000	836,000,000	30,000,000	53,600,000	125,400,000	125,400,000	125,400,000	125,400,000	250,800,000
10 층 이상		3	378,956,000	465,044,000	844,000,000	30,000,000	54,4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253,200,000	
059.9500C	103 동 3 호	4 층	1	382,997,000	470,003,000	853,000,000	30,000,000	55,300,000	127,950,000	127,950,000	127,950,000	127,950,000	255,900,000
		5 층	1	390,630,000	479,370,000	870,000,000	30,000,000	57,0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261,000,000
074.9800A	102 동 2, 4 호 115 동 3, 4 호 119 동 1, 2, 3 호	1 층	2	411,284,000	504,716,000	916,000,000	30,000,000	61,6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274,800,000
		2 층	7	424,754,000	521,246,000	946,000,000	30,000,000	64,60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141,900,000	283,800,000
		3-4 층	13	433,734,000	532,266,000	966,000,000	30,000,000	66,600,000	144,900,000	144,900,000	144,900,000	144,900,000	289,800,000
		5 층 이상	8	442,714,000	543,286,000	986,000,000	30,000,000	68,600,000	147,900,000	147,900,000	147,900,000	147,900,000	295,800,000
	125 동 1, 2 호	1 층	1	399,161,000	489,839,000	889,000,000	30,000,000	58,900,000	133,350,000	133,350,000	133,350,000	133,350,000	266,700,000
		2 층	2	412,182,000	505,818,000	918,000,000	30,000,000	61,80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137,700,000	275,400,000
		3-4 층	4	420,713,000	516,287,000	937,000,000	30,000,000	63,700,000	140,550,000	140,550,000	140,550,000	140,550,000	281,100,000
		5 층	2	429,244,000	526,756,000	956,000,000	30,000,000	65,600,000	143,400,000	143,400,000	143,400,000	286,800,000	
074.9900B	102 동 1, 3 호	1 층	1	407,243,000	499,757,000	907,000,000	30,000,000	60,700,000	136,050,000	136,050,000	136,050,000	136,050,000	272,100,000
		2 층	2	420,713,000	516,287,000	937,000,000	30,000,000	63,700,000	140,550,000	140,550,000	140,550,000	140,550,000	281,100,000

		3-4 층	4	429,244,000	526,756,000	956,000,000	30,000,000	65,600,000	143,400,000	143,400,000	143,400,000	143,400,000	286,800,000
		5 층	2	438,224,000	537,776,000	976,000,000	30,000,000	67,600,000	146,400,000	146,400,000	146,400,000	146,400,000	292,800,000
074.9900C	203 동 1, 2 호 205 동 1, 2, 3, 4 호 209 동 1, 2 호	1 층	1	392,875,000	482,125,000	875,000,000	30,000,000	57,500,000	131,250,000	131,250,000	131,250,000	131,250,000	262,500,000
		2 층	6	405,896,000	498,104,000	904,000,000	30,000,000	60,4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135,600,000	271,200,000
		3-4 층	16	414,427,000	508,573,000	923,000,000	30,000,000	62,300,000	138,450,000	138,450,000	138,450,000	138,450,000	276,900,000
		5-9 층	32	422,958,000	519,042,000	942,000,000	30,000,000	64,200,000	141,300,000	141,300,000	141,300,000	141,300,000	282,600,000
		10 층 이상	20	427,448,000	524,552,000	952,000,000	30,000,000	65,200,000	142,800,000	142,800,000	142,800,000	142,800,000	285,600,000
084.9700A	104 동 2, 3 호 110, 123 동 1, 2, 3, 4 호 115, 206 동 1, 2 호 124, 204 동 3, 4 호 201, 207, 210 동 1, 3 호 202 동 1, 3, 4 호 211 동 1, 2, 3 호	1 층	23	453,939,000	557,061,000	1,011,000,000	30,000,000	71,100,000	151,650,000	151,650,000	151,650,000	151,650,000	303,300,000
		2 층	30	468,756,000	575,244,000	1,044,000,000	30,000,000	74,400,000	156,600,000	156,600,000	156,600,000	156,600,000	313,200,000
		3-4 층	57	478,634,000	587,366,000	1,066,000,000	30,000,000	76,6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319,800,000
		5 층	29	488,512,000	599,488,000	1,088,000,000	30,000,000	78,8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326,400,000
		10 층 이상	1	493,451,000	605,549,000	1,099,000,000	30,000,000	79,900,000	164,850,000	164,850,000	164,850,000	164,850,000	329,700,000
084.9900B	201, 210 동 2 호 202 동 2, 5 호 204 동 1, 2, 5 호 207 동 2, 4 호	1 층	3	449,898,000	552,102,000	1,002,000,000	30,000,000	70,200,000	150,300,000	150,300,000	150,300,000	150,300,000	300,600,000
		2 층	9	464,715,000	570,285,000	1,035,000,000	30,000,000	73,500,000	155,250,000	155,250,000	155,250,000	155,250,000	310,500,000
		3-4 층	18	474,144,000	581,856,000	1,056,000,000	30,000,000	75,600,000	158,400,000	158,400,000	158,400,000	158,400,000	316,800,000
		5 층	9	484,022,000	593,978,000	1,078,000,000	30,000,000	77,800,000	161,700,000	161,700,000	161,700,000	161,700,000	323,400,000
084.9700C	104동 2호	4 층	1	478,634,000	587,366,000	1,066,000,000	30,000,000	76,6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319,800,000
		5 층	1	488,512,000	599,488,000	1,088,000,000	30,000,000	78,8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326,400,000
		10 층 이상	1	493,451,000	605,549,000	1,099,000,000	30,000,000	79,900,000	164,850,000	164,850,000	164,850,000	164,850,000	329,700,000
099.9800	201 동 4, 5 호	1 층	2	541,943,000	665,057,000	1,207,000,000	30,000,000	90,700,000	181,050,000	181,050,000	181,050,000	181,050,000	362,100,000
		2 층	2	559,454,000	686,546,000	1,246,000,000	30,000,000	94,600,000	186,900,000	186,900,000	186,900,000	186,900,000	373,800,000
		3-4 층	4	571,577,000	701,423,000	1,273,000,000	30,000,000	97,300,000	190,950,000	190,950,000	190,950,000	190,950,000	381,900,000
		5 층	2	583,251,000	715,749,000	1,299,000,000	30,000,000	99,900,000	194,850,000	194,850,000	194,850,000	194,850,000	389,700,000
114.9800	104 동 4, 5 호	1 층	2	625,457,000	767,543,000	1,393,000,000	30,000,000	109,300,000	208,950,000	208,950,000	208,950,000	208,950,000	417,900,000
		2 층	2	645,662,000	792,338,000	1,438,000,000	30,000,000	113,800,000	215,700,000	215,700,000	215,700,000	215,700,000	431,400,000
		3-4 층	3	659,581,000	809,419,000	1,469,000,000	30,000,000	116,900,000	220,350,000	220,350,000	220,350,000	220,350,000	440,700,000
		5 층	1	673,051,000	825,949,000	1,499,000,000	30,000,000	119,900,000	224,850,000	224,850,000	224,850,000	224,850,000	449,70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주택으로 상가공급금액(분양금액, 이하 같음)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임.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단, 그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해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 및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삼성물산주식회사)가 대행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분(주택형)		052.9800	055.9900	059.9500A	059.9800B	074.9800A	074.9900B	074.9900C	084.9700A	084.9900B	099.9800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2	6	2	1	—	2	3	1	—	17	
	장기복무 제대군인	—	2	6	2	1	—	2	3	1	—	17	
	10 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5	2	1	—	2	3	1	—	17	
	중소기업 근로자	1	4	5	3	—	1	—	2	—	—	16	
	장애인	서울특별시	1	3	3	2	1	—	1	1	1	—	13
		경기도	1	2	1	—	—	—	—	1	—	—	5
인천광역시		1	2	1	—	—	—	—	1	—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우선공급	1	3	5	2	2	1	4	7	2	1	28	
	우선공급 낙첨자, 경기도, 인천광역시(50%)	1	3	4	2	2	—	4	7	2	—	25	
신혼부부 특별공급		8	31	66	27	7	2	14	25	7	—	18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5	8	3	1	—	2	5	2	—	27	
생애최초 특별공급		8	26	24	10	4	—	7	12	4	—	95	
<b>합계</b>		<b>24</b>	<b>85</b>	<b>134</b>	<b>55</b>	<b>20</b>	<b>4</b>	<b>38</b>	<b>70</b>	<b>21</b>	<b>1</b>	<b>452</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기금과-1589)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정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함. 남은 세대수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함.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2.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b>1인만 신청가능</b>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b>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b>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청약예금의 예치금액]</b></p> <table border="1" data-bbox="271 1129 2152 1345">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함</li> <li>•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구분없이 주택형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li> <li>•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람</li> <li>•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li> <li>•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li> <li>•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li> <li>•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이 아닌 기타지역(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됨</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에 한함]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0:00~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li> </ul>
------	--

### 3.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서울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8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08. 04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제한 및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함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에 따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국토교통부(콜센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됨</li> <li>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li> </ul>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 [별표 3])

- 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6호 미적용)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08. 0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국토교통부(콜센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li> </ul>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발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발공시지가 기준)</li> </ul>
--	----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 [별표 3])**

- ①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 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 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4.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동일 주택형의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li> <li>•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가 없거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li> </ul>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b>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b> (주택형별 전체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li> <li>•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시 예비 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 사항을 준용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함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함 (다만,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 565 호, 2018.12.11.) 제 5 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기간 내 주택 소유 시 2018.12.11. 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시 2순위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청약 신청 가능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 조(9 호 제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봄)</li>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 및 제 50 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li> <li>• 인터넷 청약(청약 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건본주택)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 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 세대 1 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 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 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건본주택 청약(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현장접수의 경우 제출 및 작성한 서류)한 내용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 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 조 제 8 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 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래미안 라그란데 건본주택 방문 및 유선(T.02-407-3069)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후 변경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일정 등을 안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서류검수, 계약체결, 동호수 추첨 등 분양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li> <li>•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li> </ul>
--	--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ol> </li> <li>-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li> <li>②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li> <li>③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li> <li>④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함)되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에서는 제외 됨]</li> </ol> </li> <li>-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li> </ul>
--	---

##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일반 공급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b>가점제 (40%) 및 추첨제 (60%)</b>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b>가점제 (40%) 및 추첨제 (60%)</b>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b>전용 85㎡초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 초과 : <b>추첨제 (100%)</b> 적용</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b>2순위</b>	<b>전 주택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b>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b></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b>미혼으로 한정함</b></p> <p>- 주택공급신청자의 <b>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b>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b>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b></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b>외국인인 직계비속</b>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ul>
		1명	10	5명	30	

<b>㉓ 입주자저축 가입기간</b>		2명	15	6명 이상	35	<b>■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명	20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b>■ 청약통장</b>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b>※ 본인 청약가점 점수 = ㉑ + ㉒ + ㉓</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3.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b>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 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 순위 주택공급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 점수가 높은 순)로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입주자를 선정(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입주자를 선정(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ul>

<p>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 순위 : 1 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시 예비 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를 준용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인터넷 청약(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서류는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당첨자격 확인기간에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람</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 조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일정기간(7 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b>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 방문 및 유선(T. 02-407-3069)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후 변경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일정 등을 안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서류검수, 계약체결, 동호수 추첨 등 분양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li> <li>•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li> </ul>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b>2023.08.14(월)</b>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민로 17 래미안갤러리 3층)</li> </ul>
일반공급	1순위	<b>2023.08.16(수)</b>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b>2023.08.17(목)</b>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특별공급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됨(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 발급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 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복부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군복무 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li> <li>※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li> <li>※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li> <li>※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li> <li>(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li> <li>(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li> <li>※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의 자녀를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 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비속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이어야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자녀	• 만 30 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 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 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 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 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제 3 자 대리인 신청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본인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 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이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주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주택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 조 제 4 항 및 제 53 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 1 호와 제 2 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 의 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 의 3. 제 2 조 제 7 호의 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제 52 조 제 3 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 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m<sup>2</sup>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 제 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5 조 제 3 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 호 또는 1 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52 조 제 3 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 7696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 8 조 및 제 9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 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 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음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함(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1.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b>2023.08.23(수)</b></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3.08.26(토) ~ 2023.08.29(화) 10:00~17:00</li> <li>• 장소 :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민로 17 래미안갤러리 3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3.09.03(일) ~ 2023.09.06(수) 10:00~18:00</li> <li>• 장소 :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민로 17 래미안갤러리 3층)</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부적격 사유가 없는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계약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기간에 당첨자격을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계약금을 전부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서류' 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함**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raemian.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8.23(수) ~ 2023.09.01(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8.2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부적격 당첨자로 입증될 경우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야만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함**

## 2.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은 인증(서명인증서)된 서명도 가능,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 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군복무 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임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로 대체함 ※ '공통기본서류' 및 '해외근무자(단신부임)'와 중복되는 서류는 추가 제출 불필요				

일반공급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자녀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비속	• 가점제 당첨자는 필수 제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본인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공문,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3.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 원 / 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0,000 원 ※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②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③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본인	• 2통 제출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발급용도 : 공급계약 체결용 1통,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용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리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2통 제출)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은 인증된 서명(서명인증서)도 가능, 대리인 위임 불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본인	2통 제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1통, 추가선택품목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1통]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서명 또는 날인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용(개인정보수집안내)

※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고 당첨자격이 적격으로 확인된 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계약자)에게 귀속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서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임.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음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 조 제 3 항 및 제 57 조 제 8 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 제 1 항부터 및 제 3 항 및 제 26 조의 2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 조 제 5 항에 따라 공급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9 조에 준함

##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120-910017-50004	삼성물산(주) / 이문 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지정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5.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함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임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용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해야 함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전이라도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VI. 추가 선택품목

### □ 추가 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052.9800	055.9900	059.9500A	059.9800B	059.9500C	074.9800A	074.9900B	074.9900C	084.9700A	084.9900B	084.9700C	099.9800	114.9800
공급금액	10,100,000	11,600,000	12,000,000	12,600,000	14,200,000	11,900,000	13,200,000	12,500,000	13,200,000	13,600,000	13,700,000	14,400,000	14,800,000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안방 앞 및 일부 발코니 제외

#### ■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 기능 추가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052.9800	055.9900	059.9500A	059.9800B	059.9500C	074.9800A	074.9900B	074.9900C	084.9700A	084.9900B	084.9700C	099.9800	114.9800
공급금액	9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520,000	1,820,000

※ 설치 위치는 주택형 052.5800 3개소(거실+안방+침실), 주택형 055.9900 ~ 084.9700C 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 주택형 099.9800 5개소(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주택형 114.9800 6개소(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임

■ 빌트인 가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인덕션	빌트인 전기오븐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다가능 욕실팬	스마트 에코 샤워수전	살균수 싱크수전
052.9800	780,000	1,020,000	—	490,000	—	590,000
055.9900	780,000	1,020,000	—	980,000	—	590,000
059.9500A	780,000	1,020,000	—	980,000	440,000	590,000
059.9800B	780,000	1,020,000	—	980,000	440,000	590,000
059.9500C	780,000	1,020,000	—	980,000	440,000	590,000
074.9800A	780,000	1,020,000	—	980,000	440,000	590,000
074.9900B	780,000	1,020,000	—	980,000	440,000	590,000
074.9900C	780,000	1,020,000	—	980,000	440,000	590,000
084.9700A	780,000	1,020,000	1,420,000	980,000	440,000	590,000
084.9900B	780,000	1,020,000	1,420,000	980,000	440,000	590,000
084.9700C	780,000	1,020,000	1,420,000	980,000	440,000	590,000
099.9800	780,000	1,020,000	1,420,000	980,000	440,000	590,000
114.9800	780,000	1,020,000	1,420,000	980,000	440,000	590,000

※ 074.9900C 주택형은 세대구분형 평면으로 인덕션, 빌트인 전기오븐, 살균수 싱크수전 선택 시 주방/식당 1개소만 설치 가능함

※ 공기청정시스템은 중문 선택 시 선택가능

※ 빌트인 전기오븐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 공간/가구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현관중문		안방 수납강화			
	일반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자동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근접 센서형)	슬라이딩장 SET (벽판넬식 시스템선반가구+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장 SET+복도장	슬라이딩장 SET +의류관리기장+화장대 +복도장	슬라이딩장 SET +의류관리기장+화장대
052.9800	1,800,000	2,400,000	—	—	—	—
055.9900	1,800,000	2,400,000	—	—	—	—
059.9500A	1,800,000	2,400,000	5,830,000	—	—	—
059.9800B	1,900,000	2,500,000	5,830,000	—	—	—
059.9500C	1,800,000	2,400,000	5,830,000	—	—	—
074.9800A	1,900,000	2,500,000	—	7,940,000	—	—
074.9900B	1,900,000	2,500,000	6,250,000	—	—	—

074.9900C	1,800,000	2,400,000	5,830,000	—	—	—
084.9700A	1,900,000	2,500,000	—	—	8,980,000	—
084.9900B	1,900,000	2,500,000	—	—	—	7,560,000
084.9700C	1,900,000	2,500,000	—	—	7,690,000	—
099.9800	1,900,000	2,500,000	7,890,000	—	—	—
114.9800	1,900,000	2,500,000	—	—	8,850,000	—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주방고급화			주방돌장 구성		
	주방가구+벽체/상판	주방가구+상판확장 +벽체/상판	주방가구+벽체/상판+아일 랜드장	빌트인 김치냉장고장	홈카페장	비스포크형 냉장고장
052.9800	5,640,000	—	—	1,810,000	2,600,000	—
055.9900	6,460,000	—	—	1,720,000	2,300,000	590,000
059.9500A	6,600,000	—	—	1,730,000	2,300,000	—
059.9800B	—	—	8,050,000	1,860,000	2,300,000	770,000
059.9500C	6,600,000	—	—	1,730,000	2,300,000	—
074.9800A	6,080,000	—	—	1,720,000	2,300,000	580,000
074.9900B	—	—	8,020,000	1,860,000	2,300,000	770,000
074.9900C	7,230,000	—	—	1,460,000	2,300,000	320,000
084.9700A	6,950,000	—	—	1,720,000	2,300,000	570,000
084.9900B	—	—	8,120,000	1,860,000	2,300,000	770,000
084.9700C	6,890,000	—	—	1,720,000	2,300,000	570,000
099.9800	—	8,440,000	—	1,690,000	2,300,000	660,000
114.9800	—	—	7,710,000	1,860,000	2,300,000	770,000

■ 조명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052.9800	055.9900	059.9500A	059.9800B	059.9500C	074.9800A	074.9900B	074.9900C	084.9700A	084.9900B	084.9700C	099.9800	114.9800
거실조명 고급화	1,330,000	1,330,000	1,470,000	1,330,000	1,470,000	1,580,000	1,390,000	1,580,000	1,820,000	1,730,000	1,820,000	1,560,000	1,850,000
식탁조명 고급화	2,9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3,010,000	3,010,000	3,010,000	2,900,000	2,900,000

■ 마감

- 대형타일 아트월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Bronze Armani					Calacatta Oro				
	대형타일 아트월			대형타일 아트월 추가		대형타일 아트월			대형타일 아트월 추가	
	거실 메인 벽체1면	거실 메인 벽체1면 +복도벽체 1면	거실 메인 벽체1면 +주방 벽체 1면	거실 소파 뒷벽1면 +픽쳐레일	거실 소파 뒷벽1면 +현관 앞 복도1면 +픽쳐레일	거실 메인 벽체1면 +복도벽체 1면	거실 메인 벽체1면 +주방 벽체 1면	거실 메인 벽체1면	거실 소파 뒷벽1면 +픽쳐레일	거실 소파 뒷벽1면 +현관 앞 복도1면 +픽쳐레일
052.9800	4,550,000	—	—	5,470,000	—	3,270,000	—	—	4,240,000	—
055.9900	3,610,000	—	—	4,560,000	—	2,590,000	—	—	3,550,000	—
059.9500A	3,930,000	—	—	4,970,000	—	2,820,000	—	—	3,870,000	—
059.9800B	—	5,790,000	—	4,420,000	—	—	4,280,000	—	3,430,000	—
059.9500C	3,930,000	—	—	4,970,000	—	2,820,000	—	—	3,870,000	—
074.9800A	4,210,000	—	—	5,320,000	—	3,020,000	—	—	4,130,000	—
074.9900B	—	7,340,000	—	5,950,000	—	—	5,500,000	—	4,620,000	—
074.9900C	4,180,000	—	—	—	—	3,000,000	—	—	—	—
084.9700A	4,710,000	—	—	5,950,000	—	3,380,000	—	—	4,620,000	—
084.9900B	—	7,240,000	—	7,560,000	—	—	5,370,000	—	5,870,000	—
084.9700C	4,710,000	—	—	5,950,000	—	3,380,000	—	—	4,620,000	—
099.9800	—	—	8,420,000	—	8,380,000	—	—	6,280,000	—	6,520,000
114.9800	4,900,000	—	—	—	9,140,000	3,520,000	—	—	—	7,100,000

※ 대형타일 아트월 선택옵션 중 대형타일 아트월 추가(거실 소파 뒷벽1면+픽쳐레일, 거실 소파 뒷벽1면+현관 앞 복도1면+픽쳐레일) 선택 품목은 대형타일 아트월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함

- 마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052.9800	055.9900	059.9500A	059.9800B	059.9500C	074.9800A	074.9900B	074.9900C	084.9700A	084.9900B	084.9700C	099.9800	114.9800
광폭강마루	670,000	690,000	730,000	760,000	760,000	850,000	860,000	840,000	980,000	1,010,000	980,000	1,140,000	1,220,000
원목마루 (이태리산)	10,430,000	10,830,000	11,420,000	11,940,000	11,850,000	13,330,000	13,390,000	13,170,000	15,340,000	15,840,000	15,380,000	17,740,000	19,06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주택형 052.9800→52, 055.9900→55, 059.9500A→59A, 059.9800B→59B, 059.9500C→59C, 074.9800A→74A, 074.9900B→74B, 074.9900C→74C, 084.9700A→84A, 084.9900B→84B, 084.9700C→84C, 099.9800→99, 114.9800→114로 약식 표기함

구분	내용
<p><b>발코니 확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li> <li>·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형 냉매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구조 검토 등에 의해 창호 및 도어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난간,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계약 시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실외기공간 등) 외부 창호는 단창 또는 그릴 등으로 설치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에 의해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은 상부세대 비확장 시 천장부위의 추가 단열공사 및 배관공사로 인해 커튼박스/등박스/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등이 축소/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판넬히팅 구조는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침실 문 사이즈, 가구 및 발코니 선반 사이즈 및 위치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개별 확장 시공에 따른 하자는 원인소재에 따라 A/S 접수가 불가함</li> <li>· 디자인을 위한 입면변화가 적용되어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의 형태, 개소 및 유효면적이 다를 수 있음</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청소용 수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공간에 냉장고 설치 시 발코니 사이즈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발코니 확장 및 비확장에 따라 세대 내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수량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li> </ul>
<p><b>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 기능 추가</b></p> <p><b>무풍+공기청정형 (제조사: 삼성전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공기청정형) 유상옵선 상품 미선택 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형)이 전실 제공됨 (단, 84타입 이하 세대는 주방을 제외한 전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공기청정형) 판매가는 기본제공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형)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공기청정형)은 유상옵선이며, 설치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공기청정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견본주택 설치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시공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임</li> </ul>
<p><b>빌트인 가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덕션(전타입 적용 / 제조사: 삼성전자)</b></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4구 가스쿡탑이 설치됨</li> <li>·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li>·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li> <li>·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li> </ul>

**- 빌트인 전기오븐(전타입 적용 / 제조사: 삼성전자)**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가구로 마감됨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84~114타입 적용 / 제조사: 하츠)**

- 해당 옵션은 현관중문 선택 시 선택 가능함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됨
-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해당 제품은 조명 일체형으로,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의 현관조명은 설치되지 않음
- 컨트롤러 색상은 벽체 마감 색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기능 욕실팬(전타입 적용 / 제조사: 힘펠)**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배기팬이 설치되며, 견본주택 59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해당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모든 욕실(52타입 1개소, 55~114타입은 2개소)에 제품이 설치되며, 기존의 일반 배기팬의 설치위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기능 욕실팬은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스마트 에코 샤워수전(59~114타입 적용)**

- 해당 옵션은 견본주택 59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샤워수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됨
-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살균수 싱크수전(전타입 적용)**

- 해당 옵션은 견본주택 59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수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됨
-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공간 /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관중문(①일반 현관중문 또는 ②자동 현관중문 중 선택 / 전타입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 선택 시 신발장 길이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디딤판의 위치 및 사이즈(폭,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평면 구조 및 현관 크기에 따라 중문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평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세부 디테일 및 형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방 시 벽체에서 돌출되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li> <li>· 현관 중문은 세대 내 공간 분리를 위한 문으로 단열, 차음, 기밀 등의 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상품임</li> <li>· 자동 현관중문 선택 시 동작센서식이 아닌 근접센서식이 설치되며, 작동방식이 상이하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li> <li>· 현관중문 하부레일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발생함</li> </ul> </li>   <li>- <b>안방 수납강화(①슬라이딩장SET: 59A, 59B, 59C, 74B, 74C, 99타입 적용, ②슬라이딩장SET+복도장: 74A타입 적용, ③슬라이딩장SET+의류관리기장+화장대+복도장: 84A, 84C, 114타입 적용, ④슬라이딩장SET+의류관리기장+화장대: 84B타입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은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단, 평면 조건에 따라 가구 사이즈 및 위치, 구성항목이 상이하오니 각 타입별 옵션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안방은 기본형 벽지 및 마루로 시공되며, 드레스룸(74A, 74B, 84타입 이상)은 시스템선반+가구도어 및 화장대가 시공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고객 요청에 의한 설치 위치 변경이 불가하며, 접해있는 벽체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공간 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li> <li>· 수납성 개선 및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99타입의 경우 옵션 선택 시 욕실2 출입문 방향이 변경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74A, 84A, 84B, 84C, 99, 114타입은 화장대의 위치가 변경되며, 74A, 99타입은 간이화장대(기본형과 동일), 84A, 84B, 84C, 114타입은 붙박이장 타입의 화장대로 제공되며, 의류관리기장이 함께 제공됨(가전 미포함) 의류관리기장으로 인해 화장대 폭이 기본형보다 축소됨</li> <li>· 옵션에 포함된 의류관리기장(84A, 84B, 84C, 114)은 의류관리기를 놓을 수 있는 곳으로, 가전제품은 함께 제공되지 않으며, 설치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수 없음</li> <li>· 74A, 84A, 84B, 84C, 114타입은 옵션 선택시 기존의 드레스룸이 삭제되며, 84A, 84C, 114 타입은 복도장이 추가됨</li> </ul> </li>   <li>- <b>주방 고급화(①주방가구+벽체/상판: 52, 55, 59A, 59C, 74A, 74C, 84A, 84C타입 적용, ②주방가구+상판확장+벽체/상판: 99타입 적용, ③주방가구+벽체/상판+아일랜드장: 59B, 74B, 84B, 114타입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은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단, 평면 조건에 따라 가구 사이즈 및 구성항목이 상이하오니 각 타입별 옵션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옵션 선택 시 59B, 74B, 84B, 114 타입에 설치되는 아일랜드장은 이동식장으로 바닥이나 벽체에 고정되지 않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가구 및 마감재는 59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단, 평면 조건에 따라 가구 사이즈 및 구성항목이 상이하오니 각 타입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하부장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의 도서상 표기된 가전류(인덕션)는 별도 옵션품목임</li> </ul> </li>   <li>- <b>주방틀장 구성(①빌트인 김치냉장고장/제조사: 삼성전자, 전타입 적용, ②홈카페장: 전타입 적용, ③비스포크형 냉장고장: 55, 59B, 74A~114타입 적용/ ※52, 59A, 59C타입 제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중 홈카페장은 견본주택 59A타입에서, 비스포크형 냉장고장은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단, 평면 조건에 따라 가구 사이즈 및 구성항목이 상이하오니 각 타입별 옵션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52, 59A, 59C타입은 비스포크형 냉장고장 옵션이 제공되지 않음</li> <li>· 빌트인 가전 및 가구 부위에는 바닥 및 후면에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주방고급화와 홈카페장 중복 선택 시 홈카페장의 엔지니어드스톤은 스타일 선택과 무관하게 그레이차콜로 시공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배선기구의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후면 벽지, 바닥은 마루가 시공됨</li> <li>· 빌트인 김치냉장고장 선택 시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함께 설치됨</li> <li>· 비스포크형 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해당 가전의 설치가 용이한 장을 제공하며, 가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설치하려는 가전의 종류에 따라 들어가지 않거나, 공간이 많이 남을 수 있음</li> </ul> </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조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거실조명 고급화(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2면 라인조명(감성조명+간접등) 및 거실 전/후면 다운라이트가 시공되며 배선기구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은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물천장 사이즈에 따라 세대 타입별 라인조명의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라인조명 연결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천장에 부착되는 직부등이 설치되며 견본주택 59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타입에 따라 조명기구의 크기 및 개수가 상이하오니 옵션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b>식탁조명 고급화(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식탁 조명이 설치됨(84타입 이하는 매입형, 99타입 이상은 기본형 펜던트 조명)</li> <li>· 해당 옵션은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li> <li>· 세대 타입별로 조명기구의 사이즈가 상이하오니 옵션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식탁 공간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램프 색상이 일반조명 대비 전구색에 가까우며, 펜던트 조명기구는 설치장소의 공기 흐름에 따라 다소 움직일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마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형타일 아트월(①거실 메인 벽체1면: 52, 55, 59A, 59C, 74A, 74C, 84A, 84C, 114타입 적용, ②거실 메인 벽체1면+복도벽체1면: 59B, 74B, 84B타입 적용, ③거실 메인 벽체1면+주방벽체1면: 99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거실 메인벽체 1면 및 복도(59B, 74B, 84B타입) 혹은 주방(99타입) 1면에 대형타일 아트월이 시공됨. 84B타입은 복도에 설치된 팬트리 도어의 색상이 아트월에 따라 변경됨</li> <li>· 해당 옵션 중 Bronze Armani는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옵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타일의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의 컬러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거실 메인벽체 1면에 기본형 타일 아트월이 시공됨</li> <li>· 아트월 설치면은 마감재 두께에 의해 실(복도) 내경이 작아지며, 인접 목창호의 두께, 폭, 디테일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b>대형타일 아트월 추가(①거실 소파 뒷벽1면+픽처레일 추가: 52, 55, 59A, 59B, 59C, 74A, 74B, 84A, 84B, 84C타입 적용, ②거실 소파 뒷벽1면+현관 앞 복도1면+픽처레일 추가: 99, 114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은 대형타일 아트월 옵션 선택 시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 선택 시 거실 소파 뒷벽1면 및 현관 앞 복도1면(99, 114타입에 한함)에 대형타일 아트월 및 픽처레일이 시공됨. 픽처레일로 와이어는 제공되지 않음</li> <li>· 해당 옵션 중 Calacatta Oro는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옵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li> <li>· 타일의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의 컬러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벽지가 시공됨</li> <li>· 아트월 설치면은 마감재 두께에 의해 실(복도) 내경이 작아지며, 인접 목창호의 두께, 폭, 디테일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b>마루(①광폭강마루 또는 ②이태리산 원목마루 중 선택 / 전타입 적용)</b></li> <li>·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li> <li>· 해당 옵션 중 Greige 컬러는 견본주택 84A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강마루로 시공됨</li> <li>· 원목마루는 천연 자재로 실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재특성 상 고유의 웅이 및 무늬, 워터라인이 있을 수 있음. 동일수종의 자재여도 색상과 무늬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마루의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ul>

<b>공통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추가로 선택가능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옵션중도금 납부일 이후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li> <li>·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입주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li> <li>·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사 시 제조사,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시 반드시 확인 바람</li> <li>·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제시된 선택품목에 한하여 계약체결 예정임.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행사 이전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임</li> <li>· 추가 선택품목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 일자에 입금 바람,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li> <li>·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li> <li>·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li> <li>·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기본제공 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람</li> <li>· 타입 평면구조에 따라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형태, 장 길이, 디테일 등은 상이할 수 있음</li> </ul>
---------------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금 일정 및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금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옵션)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납부일정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계약금 미입금 시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됨
-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하여 시행자 및 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 기본 선택품목

구분	마감		가구 / 공간
	거실 타일 아트월(거실 메인 벽체 1면) 색상 선택 [①발마렌코 비앙코 ②카노바 루니 중 택1]	강마루 색상 선택 [①누크 화이트 ②스웨디쉬 화이트 중 택1]	세대통합형 침실(침실1 도어설치)
해당 주택형	전 타입	전 타입	74C

■ 기본 선택품목 유의사항

구분	내용
<p>마감</p>	<p><b>-강마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누크 화이트 색상으로 시공됨</li> <li>· 마루의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li> </ul>
<p>가구 /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C타입은 세대 구분형 평면으로 벽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 선택 시 실내문이 설치됨</li> <li>· 세대 통합형 침실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 세대의 출입구, 전기 및 설비 관련 시설(전기/수도/가스계량기 월패드, 분전반, 통합단자함, 환기장비, 보일러 및 온도조절기 등)은 별도로 시공되며, 구분 세대(침실1) 부위에 시공되는 각종시설(환기, 보일러, 온도조절기, 에어컨, 홈네트워크, 일괄소등 등)의 월패드, App등에서의 일괄제어가 불가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분리검침 가능하도록 시공됨</li> <li>· 분리세대의 경우 홈네트워크 마감상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li> <li>· 구분 세대에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이 없어 본 세대의 실외기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함</li> <li>·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의 분리시공으로 가스기본요금이 구분세대와 본세대에 각각 발생 됨</li> <li>· 환기장비 등의 분리 시공으로 유지관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음</li> <li>·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세대구분형으로 시공됨</li> </ul>

## VII.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예정일 및 사전 점검 안내

- 입주예정일 : 2025년 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시행자” 및 “시공자”는 “계약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의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함
- 천재지변 또는 “시행자”,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이 경우 본조 제3항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 입주자 사전 점검 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45일~75일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는 실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부터 관리비를 부담함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따름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주민운동시설(옥외),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3개소(배드민턴장 2개소, 일반운동시설 1개소), 게스트하우스 등 [카탈로그 참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2.3m (택배차량 진입 출입구 2.7m)	2.3m (획지-1 지하 3,5 층 2.7m, 획지-2 지하 2 층 2.7m)	2.1m

■ 내진 설계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97g임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 정보통신
회사명	(주)전인 CM 건축사사무소 외 2 개사	(주)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주식회사 동화이엔씨
감리금액	8,055,872,000	1,281,967,530	1,306,8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577,411,800,000 원	제01282023-101-0004000호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 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1단지		2단지												
<p><b>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 건축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등</td> <td style="width: 10%;">급</td> <td style="width: 80%;">예비인증 2등급</td> </tr> </table>		등	급	예비인증 2등급	<p><b>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 건축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동시에 알려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등</td> <td style="width: 10%;">급</td> <td style="width: 80%;">예비인증 2등급</td> </tr> </table>		등	급	예비인증 2등급					
등	급	예비인증 2등급												
등	급	예비인증 2등급												
<p><b>분</b></p> <p><b>평</b></p> <p><b>가</b></p> <p><b>결</b></p> <p><b>과</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td> <td style="width: 70%;">327.71 MJ/m<sup>2</sup>·년</td> </tr> <tr> <td>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td> <td>18.39 kgCO<sub>2</sub> /m<sup>2</sup>·년</td> </tr> <tr> <td>총에너지절감율</td> <td>30.93 %</td> </tr> </table>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27.71 MJ/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8.39 kgCO <sub>2</sub> /m <sup>2</sup> ·년	총에너지절감율	30.93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td> <td style="width: 70%;">330.95 MJ/m<sup>2</sup>·년</td> </tr> <tr> <td>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td> <td>18.57 kgCO<sub>2</sub> /m<sup>2</sup>·년</td> </tr> <tr> <td>총에너지절감율</td> <td>31.01 %</td> </tr> </table>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30.95 MJ/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8.57 kgCO <sub>2</sub> /m <sup>2</sup> ·년	총에너지절감율	31.01 %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27.71 MJ/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8.39 kgCO <sub>2</sub> /m <sup>2</sup> ·년													
총에너지절감율	30.93 %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30.95 MJ/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8.57 kgCO <sub>2</sub> /m <sup>2</sup> ·년													
총에너지절감율	31.01 %													
<p><b>인</b></p> <p><b>증</b></p> <p><b>번</b></p> <p><b>호</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0%;">10-공-예-2-0027</td> </tr> </table>		10-공-예-2-0027	<p><b>인</b></p> <p><b>증</b></p> <p><b>번</b></p> <p><b>호</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0%;">10-공-예-2-0028</td> </tr> </table>		10-공-예-2-0028							
10-공-예-2-0027														
10-공-예-2-0028														
<p><b>건</b></p> <p><b>축</b></p> <p><b>물</b></p> <p><b>명</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0%;">이문1재정비혁신구역주택재개발 아파트 (택지1)</td> </tr> </table>		이문1재정비혁신구역주택재개발 아파트 (택지1)	<p><b>건</b></p> <p><b>축</b></p> <p><b>물</b></p> <p><b>명</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0%;">이문1재정비혁신구역주택재개발 아파트 (택지2)</td> </tr> </table>		이문1재정비혁신구역주택재개발 아파트 (택지2)							
이문1재정비혁신구역주택재개발 아파트 (택지1)														
이문1재정비혁신구역주택재개발 아파트 (택지2)														
<p><b>소</b></p> <p><b>재</b></p> <p><b>지</b></p> <p><b>주</b></p> <p><b>소</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0%;">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일대</td> </tr> </table>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일대	<p><b>소</b></p> <p><b>재</b></p> <p><b>지</b></p> <p><b>주</b></p> <p><b>소</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0%;">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일대</td> </tr> </table>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일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일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일대														
<p>2010년 09월 16일</p> <p>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p> 		<p>2010년 09월 20일</p> <p>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p>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구 친환경건축물 인증)

1단지



제 1 - 470 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대상건축물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택지1)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부문 : 공동주택  
 인증기간 : 2010년 6월 10일 ~ 사용검사일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건축물의 건축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에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지



제 1 - 471 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대상건축물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택지2)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 42번지 일대  
 부문 : 공동주택  
 인증기간 : 2010년 6월 10일 ~ 사용검사일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장

건축물의 건축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에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시행자)	시공회사(시공자)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법인등록번호: 264171-0006736)	삼성물산(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15762)

## Ⅷ. 유의 사항

### ■ 일반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약은 2023.06.29일 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 및 2022.07.01일 관리처분변경총회까지 의결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시행자"가 조합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할 수 있음</li> <li>·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건본주택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계약 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li> <li>·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시행자"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기타 사항에 공지된 항목은 "시행자"가 조합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li> <li>· 관리비는 단지별로 각각 또는 통합 산정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예정임</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li> <li>·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li> <li>· 개인적인 확장 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li> <li>·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경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li> <li>· "계약자" ("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li> <li>·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은 건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함</li> <li>·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 시에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입주 전 별도 안내 예정임</li> <li>· 단지 내 부대 복지시설(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카페테리아 등)은 "시행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공용)보도는 준공 이후 입주인이 관리해야 함</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li> <li>·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 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li> <li>· 본 단지는 획지-1, 획지-2로 구분되어 있으며, 획지-1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구분 없이 계획되었음. 획지별 구분 없이 단지 내 모든 부대복지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임대)아파트 입주인과 공동 사용함</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 없이 "시행자"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li> <li>· 「영유아보육법」 개정(2018.12.24, 2020.12.29)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시행여부 및 운영여부를 결정 예정임</li> <li>·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li> <li>·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 행위)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li> <li>· 학교 배정 등 교육 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자"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람</li> </ul>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모든 공장 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 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사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시공이 어려워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 품질, 생산 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 거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인 조합의 결정(조합에 위임)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마감재는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마감재의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든 천연자재의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표면무늬가 일정하지 않음. 원목마루 및 천연 무늬목 등은 동일 수종이라 하여도 천연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옹이가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음 천연석의 경우 패턴과 색상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석재별로 균열의 흔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li> <li>· 아트월 및 벽체에 부착된 타일 및 석재는 시공법에 따라 골조벽체와 떠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TV 설치 등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 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 바람</li> <li>· 세대 내부 마감재(시트, 도배지, 타일, 마루 등)의 제조사 및 컬러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ul>
견본주택/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전시품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건립세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기본제공 옵션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li> <li>· 견본주택에 들어가는 전시품에는 가구 및 조명과 함께 전시조명에 들어가는 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전원은 본 공사 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li> <li>·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착공 기준으로 제작되어 착공 이후 설계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 기기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비상방송용 스피커 및 스프링클러 헤드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 하였으므로 기본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가구배치 및 각 품목의 지급여부가 다르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 조건을 확인 후에 청약 또는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 가능함</li> <li>·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 제품으로 시공됨</li> <li>· 견본주택에 제공되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형, CG와 견본주택 시공내용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함</li> <li>·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유상 옵션 상품·기본제공 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ul>

■ 설계 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수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계약서에 표시된 대지지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획지별로 전체 면적을 합산 후 분양(공급)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li> <li>· 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도로로 2개의 획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 7(주택단지)의 ‘다·항」에 따라 하나의 “시행자”로 분양되고 공동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하나의 단지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부대복리시설 등도 하나의 단지로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함</li> <li>·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구조물(옹벽, 산벽, 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높이,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에 대해 “시행자”에 요청하여 일조 시뮬레이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특정 세대에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세대의 사용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사용범위는 최종 인허가 도면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임대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함)</li> <li>· 단지 내 상가는 대지가 별도로 구획되지 않고 공동주택과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며, 상가 주차장은 공동주택과 공동 사용함</li>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장 여건상 동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함</li> <li>· 실외 텃밭이 설치될 경우, 조성되는 면적과 수량이 한정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칭)” 주관으로 배분 및 운영함</li> <li>· 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됨</li> <li>· 각종 인증(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등)에 제시된 시험 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음</li> <li>·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현황 시설물을 고려하여 축진구역 경계 조정 예정이며, 경계 조정에 따라 관계법령(주택법시행규칙) 내의 대지지분이 증감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외부의 도로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li> <li>·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정해진 경계범위 외부는 사용할 수 없음</li> <li>·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되는 세대들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개방하여야 함</li> </ul>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크 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 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용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li> <li>·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종교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도로, 학교,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추후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li> <li>·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운영실(헤스티아 라운지 등)을 공용창고,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li> <li>· 세대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되며, 평형별로 크기 및 형태, 위치,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한 보관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예정임</li> <li>· 각 세대의 세대창고는 세대 주동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일부 주동은 구조형식 등의 사유로 지하 출입구 주변 또는 가까운 다른 주동에 별도 설치됨</li> <li>[103동 1번 코아, 113동 1번 코아/2번 코아, 115동 1번 코아, 119동 1번 코아, 121동 1번 코아, 122동 1번 코아, 123동 2번 코아, 201동 2번 코아, 203동 → 202동 하부에 설치, 205동 → 204동 하부에 설치, 206동 → 204동/207동 하부에 설치]</li> <li>·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li> <li>· 기부채납하는 공원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 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 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설치 유무 및 형태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단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동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광장, 상가, 드롭존 등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어린이놀이터 : 105동, 106동, 110동, 114동, 115동, 116동, 118동, 120동, 125동, 126동, 127동, 128동, 201동, 202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211동</li> <li>/ 유아놀이터 : 120동, 121동, 122동, 123동, 204동, 207동, 210동, 211동</li> <li>/ 실외운동시설 : 110동, 111동, 113동, 114동, 122동, 123동, 124동, 206동</li> <li>/ 상가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201동, 203동, 205동, 206동, 209동, 210동, 211동</li> <li>/ 드롭존 : 103동, 104동, 203동, 205동 ]</li> <li>·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상가, 승강기, 계단실, 옥상구조물, 구조물(옹벽, 산벽, 조경석),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li> <li>[ 주민공동시설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5동, 116동, 118동, 119동, 120동, 123동, 201동, 202동, 204동, 207동, 210동, 211동</li> <li>/ 상가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201동, 203동, 205동, 206동, 209동, 210동, 211동</li> <li>/ 문주 : 101동, 103동, 104동, 111동, 112동, 128동, 203동, 205동, 209동, 210동</li> <li>/ 승강기실·계단실 :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116동, 118동, 119동, 120동, 123동, 124동, 201동, 204동, 207동, 211동</li> <li>/ 구조물(옹벽, 산벽, 조경석) : 112동, 113동, 114동, 115동, 116동, 117동, 121동, 122동, 124동, 125동, 126동</li> <li>/ 유치원 : 104동, 105동</li> <li>/ 어린이집 : 104동, 105동, 120동, 123동, 204동, 207동, 210동, 211동</li> <li>/ 경로당 : 207동, 208동, 209동, 210동 ]</li> <li>· 동 주변에는 인접동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정화조, 사우나,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열교환실, MDF실, 재활용쓰레기보관소 등), 공공보행통로의 배기구, 환기구 및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li> <li>· 동 주변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중간펌프실, 재활용쓰레기보관소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개소,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연료전지실, 한전인입개폐기, 저수조, 정화조, 빗물저류조, 가스정압기, 실외기실, 주민공동시설 및 상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백연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실 : 106동, 107동, 118동, 120동, 202동, 203동 / 사우나기계실 : 104동, 119동, 120동, 207동 / 전기실 : 110동, 114동, 115동, 122동, 124동, 204동 동 하부 및 주변 인근 / 발전기실 : 110동, 114동, 115동, 122동, 124동, 204동, 207동 동 하부 및 주변 인근 / 연료전지실 : 102동, 103동, 119동, 123동, 201동, 211동 동 하부 및 주변 인근 / 한전인입개폐기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201동, 203동, 205동, 209동 주변 인근 / 저수조 : 106동, 107동, 118동, 120동, 202동 / 정화조 : 103동, 104동, 107동, 108동, 109동, 112동, 201동, 203동, 210동, 211동 / 빗물저류조 : 102동, 105동, 107동, 114동, 125동, 128동, 202동, 211동 / 가스정압기 : 104동 / 실외기실 :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5동, 118동, 202동, 207동 / 주민공동시설 : 110동, 115동, 116동, 118동, 119동, 120동, 123동, 202동, 204동, 207동, 208동, 209동, 210동 / 상가 :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201동, 203동, 205동, 206동, 209동, 210동, 211동(인근동 포함) ]</li> <li>·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산책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차량 출차주의등 경보음 및 전조등,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110동, 111동, 116동, 119동, 122동, 123동, 125동, 208동, 209동 하부에는 차량진출입 도로 또는 램프가 설치되며 차량에 의한 진동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옥외 주차관제 출차주의등 : 101동, 103동, 104동, 111동, 112동, 124동, 125동, 128동, 203동, 205동, 209동, 210동 주변 인근]</li> <li>·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다음 동은 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되어 있으며,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상가 포함)의 실외기가 주동 하부, 조경공간, 상가 지붕층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5동, 116동, 118동, 119동, 120동, 123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7동, 208동(인근동 포함)]</li> <li>· 부대복리시설(상가 포함) 지붕에는 옥상조경 및 산책로 등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 동 및 주변동(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5동, 118동, 119동, 120동, 123동,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9동, 210동 등)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피해, 사생활 침해 및 보안상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경계 담장은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옹벽, 석축,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상의 모든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 운행 층수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 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됨</li> <li>·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북서측 의릉 주변이 단지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어 해당 인접동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113동, 114동, 115동, 116동, 117동, 121동, 122동, 124동, 125동, 126동]</li> <li>· 모든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보행통로의 주변에는 실외기 또는 공조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카탈로그 등의 자료 참조]</li> <li>· 안방 또는 침실 벽체 옆에 공용계단이 설치되어 공용계단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101동 1호 라인, 102동 1,2,3호 라인, 103동 2,6호 라인, 104동 1,2호 라인, 105동 9,10호 라인, 106동 4,5,6호 라인, 107동 7,8호 라인, 108동 8,9호 라인, 109동 8,9호 라인, 111동 1,2호 라인, 112동 1,2호 라인, 113동 3,4호 라인, 114동 3,4호 라인, 117동 1,2,3,4호 라인, 118동 2,3호 라인, 119동 3호 라인, 127동 1,2호 라인, 128동 2,3호 라인, 204동 1,2,5호 라인, 207동 1,2,4호 라인, 211동 1,2호 라인</li> <li>· 단지 내외부 배수 구조물은 세대 및 옥외 유출레벨확정 및 지상배관 Cross 검토결과에 따라 규격, 위치, 개소, 관경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축심의 조건에 따라 방사형 주동 배치 계획이 적용되어 다음의 주동은 서향 배치로 계획됨 [124동, 125동, 126동, 127동, 128동]</li> <li>· 관할 소방서 협의에 따라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소방차 정차구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주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의 승강기는 기계실이 없는 타입(MRL)이 적용되며, 각 동별 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됨        101동 1코아 15인승 1대, 101동 2코아 15인승 1대, 102동 1코아 17인승 1대, 102동 2코아 17인승 1대, / 103동 1코아 17인승 1대, 103동 2코아 17인승 1대, 103동 3코아 17인승 1대, 104동 1코아 15인승 2대, 104동 2코아 17인승 1대, 105동 1코아 24인승 2대, 105동 2코아 17인승 1대, 106동 1코아 15인승 1대, / 106동 2코아 15인승 1대, 106동 3코아 15인승 1대, 107동 1코아 15인승 2대, 107동 2코아 15인승 1대, 108동 1코아 15인승 2대, 108동 2코아 15인승 1대, 109동 1코아 15인승 2대, 109동 2코아 15인승 1대, / 110동 1코아 15인승 1대, 110동 2코아 15인승 1대, 111동 1코아 15인승 1대, 111동 2코아 15인승 1대, 112동 1코아 15인승 1대, 112동 2코아 15인승 1대, 113동 1코아 15인승 1대, 113동 2코아 15인승 1대, / 114동 1코아 15인승 1대, 114동 2코아 15인승 1대, 115동 1코아 15인승 1대, 115동 2코아 15인승 1대, 116동 1코아 15인승 1대, 116동 2코아 15인승 1대, 117동 1코아 15인승 1대, 117동 2코아 15인승 1대, / 118동 1코아 15인승 1대, 118동 2코아 15인승 1대, 119동 1코아 15인승 2대, 119동 2코아 17인승 1대, 120동 1코아 15인승 1대, 120동 2코아 15인승 1대, 121동 1코아 15인승 1대, 121동 2코아 15인승 1대, / 122동 1코아 15인승 1대, 122동 2코아 15인승 1대, 123동 1코아 15인승 1대, 123동 2코아 15인승 1대, 124동 1코아 15인승 1대, 124동 2코아 15인승 1대, 125동 1코아 15인승 1대, 126동 1코아 15인승 1대, / 127동 1코아 15인승 1대, 127동 2코아 15인승 1대, 127동 3코아 15인승 1대, 128동 1코아 15인승 1대, 128동 2코아 15인승 1대, 201동 1코아 15인승 2대, 201동 2코아 17인승 1대, 202동 1코아 15인승 2대, / 202동 2코아 17인승 1대, 203동 1코아 15인승 1대, 203동 2코아 15인승 1대, 204동 1코아 15인승 2대, 204동 2코아 17인승 1대, 205동 1코아 15인승 1대, 205동 2코아 15인승 1대, 206동 1코아 15인승 1대, / 206동 2코아 15인승 1대, 207동 1코아 17인승 1대, 207동 2코아 17인승 1대, 208동 1코아 15인승 1대, 209동 1코아 15인승 1대, 210동 1코아 15인승 2대, 211동 1코아 15인승 2대, 211동 2코아 17인승 1대</li> <li>· 전체 세대 안방 발코니에는 입면분할창호 또는 미니태양광판넬 적용, 거실 발코니 구간에는 유리난간통창호 적용으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함 (침실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5동, 107동, 108동, 109동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같은 동에 계획됨</li> <li>• 레벨 차이로 인해 주동 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저층부 석재마감과 다른 마감이 적용될 수 있음</li> <li>• 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 시공 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붕구조물은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일부 주동 지붕(28개동)에는 태양광 집광판, 일부 주동 측벽(6개동)에는 측벽형 태양광 집광판, 일부 최상층 세대(142세대) 안방 앞 발코니에는 미니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상세계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측벽형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는 103동, 104동, 119동, 123동, 203동, 211동 남측에 있는 102동, 103동, 202동, 204동, 205동, 206동은 빛의 산란 등에 의한 눈부심 및 조망 침해가 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 설치 위치 : 101동~111동, 118동~120동, 123동, 127동, 128동, 201동~211동]</li> <li>•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 피뢰침, 측벽보호형 피뢰침(건물 외벽 보호), 경관조명,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시설물 중 TV공청 및 위성 안테나 설치 위치는 아래와 같음 (단, 옥탑 및 지붕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위치, 수량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TV 공청 및 위성 안테나 설치 위치 : 104동, 202동 옥상 / 일부 옥상층에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1,2 단지 커뮤니티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인프라(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주동 우편함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 및 색채, 줄눈, 외장재 재질, 커튼월록 프레임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옥상조경, 벽면녹화 계획(적용여부, 설치부위, 마감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됨</li> <li>• 공동주택 로비, 필로티의 평, 입면 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 천장고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 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디자인 변경에 따라 추가 마감재(유리, 금속 등) 적용 또는 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며, 추가되는 마감재와 104동, 201동 측벽에 설치되는 아트파사드로 인하여 외부마감재 및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층 내 PIT 내부 일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됨</li> <li>• 128동 주출입구 전면 및 128동, 101동 사이 부출입구 전면부에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설치되어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 동 옥상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 동 지상 또는 지하에 제연팬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층수가 다를 경우 법규에 의해 엘리베이터 홀 내 제연설비 설치 유무가 다를 수 있음 [제연설비 미설치 : 112동, 114동, 124동, 126동]</li> <li>• 단지 고저차에 따라 일부 주동에서는 낮은 쪽 지면에서 연결되는 곳에 출입구가 설치되며, 높은 쪽 지면과 연결되는 부분의 보행자 동선은 없음 [110동, 111동, 113동, 114동, 119동, 122동, 124동, 125동, 128동]</li> <li>• 118동, 119동, 120동 인근에 부대시설 카페테리아/ 식사서비스(화구 이용)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부대시설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공 예정인 식사서비스의 시행시기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외부 입면 돌출 장식물, 옥탑장식물에 의해 일부 채광 및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음</li> <li>• 입면 디자인을 위해 경관조명, 입면변화, 돌출 구조물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주변 세대의 야간 빛 간섭, 주간 채광 간섭, 햇빛 반사 및 우수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실 시공 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0호에 따라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27동, 128동 서측의 중로 1-432에 위치한 사업부지내 사유지의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보행통로는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 “공공보행통로 사용동의서”를 작성 및 공증하여 준공 전 관할청에 제출하여, 준공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가 공공보행통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함</li> </ul>
부 대 복 리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접근거리 및 지하주차장을 통한 접근여부 등이 동별로 상이함. 획지-1, 획지-2는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각각의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은 지하로 연결되지 않음</li> <li>•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및 마감재 등은 “시행자”의 요청으로 카탈로그와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 및 기능, 구조, 성능 개선, 배관 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 재질 및 색상, 창호 및 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인가 도서, 견본주택,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상에 표기된 불박이 가구/ 기기류만 제공</li> <li>•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 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li> <li>• 실제 공사 시 피트니스 운동기구 종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 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열리는 창의 크기,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지하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획지-1은 단지 고저차에 따라 지하주차장 5개층이 계단형으로 계획되어, 주동 위치에 따라 지하주차장과 접하는 개소는 각 동별 상이하며 동별 주차대수 배분 비율이 다를 수 있음 [지하5층, 지하4층 2개층 연결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2동, 119동 / 지하5층, 지하4층, 지하3층 3개층 연결 : 111동, 113동, 125동, 128동 / 지하4층, 지하3층 2개층 연결 : 126동, 127동 / 지하3층, 지하2층 2개층 연결 : 110동, 114동, 124동 /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3개층 연결 : 115동, 116동, 117동, 118동, 120동, 121동, 122동, 123동]</li> <li>· 지하주차장의 일부는 PC 및 PRS(데크 포함) 구조로 적용될 수 있으며, 부재의 크기, 형태, 특성 등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획지별, 동별 특성에 따라 주차대수는 상이함[획지-1 주차대수 : 2,566대, 획지-2 주차대수 : 1,236대] (전기차 충전공간 포함)</li> <li>·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또는 PVC판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주차대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획지-1 131대, 획지-2 64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위치는 동별 배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고, 관련법령 및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일반자동차의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설계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일반 자동차의 충전방해 행위는 법규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li> <li>· 택배보관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차유도 시스템은 지하 전층에 설치되고 조합 협의에 따라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의 지붕 구조물은 시공되지 아니하며, 추후 "시행자" 의사결정에 따라 지붕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획지-1 주차장 지하 3, 5층, 획지-2 지하 2층은 택배차량의 접근을 고려하여 차량 동선의 유효높이는 270cm로 계획됨</li> <li>· 지하주차장이 PC로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음</li> <li>· 지하주차장의 PC 적용 부위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주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음</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연못, 인공형 수경시설 등)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조경의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 계획, 시설물 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대관 인허가,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구간·면적, 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의 옥상 및 캐노피에 녹화 및 조경시설은 실시공 시 설치유무 및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주동(112동, 113동, 114동, 115동, 116동, 117동, 118동, 120동, 121동, 122동, 124동, 125동, 126동)의 옥상 녹화로 인해 해당 동과 주변 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피해, 사생활 침해 및 보안상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주출입구 /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li> <li>·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의 반영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될 수 있음</li> </ul>
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임</li> <li>· 상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 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실외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li> </ul>
단위세대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 두께, 창호 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물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li> <li>· 세대 내 안목치수 산정 시 유무상 옵션 마감재, 아트월, 가구, 걸레받이, 천장물딩 등은 포함되지 않음(기본형 평면으로 적용)</li> <li>· 세대 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 등박스 등의 크기, 높이, 형태 등은 각종 배관, 오픈 발코니의 유무 등 현장여건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특히 커튼박스는 설비배관 등의 사유로 타입별 설치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함</li> </ul>

- 이웃세대 확장 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 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
- 단위세대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기계장치와 인접한 층에서는 세대 내부에 승강기 작동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최상층 승강기 출입구 주변에는 승강기 제어반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 벽체의 재질은 변경(골조, 조적, 건식벽체 등)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의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 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 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욕실, 발코니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 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불박이 가구 및 욕실거울, 욕조, 워셔드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 두께, 디테일 등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시공 시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이 상이할 수 있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 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안방을 포함한 세대침실 및 욕실문의 도어록 사양은 키가 없는 타입임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가전의 대형화에 따라 주방가구 및 발코니에 특정 가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경우 가전의 종류에 따라 주방쪽으로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석재 및 타일, 시트판넬의 나누기는 본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입타일 등 외산자재의 경우 자체 특성상 제품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품의 사이즈 및 줄눈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설치되는 불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설치를 아니할 수 없음.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불박이장, 주방가구 및 발코니 선반의 길이 및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 현관아트월 설치 여부 및 위치는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현관문에 도어체인이 설치되거나, 침실문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적용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내부 구성, 불박이장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함 (불박이장 위치는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해당 실 창호 및 커튼박스 유무 또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선반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코너선반, 악세서리 제공 여부, 키크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안전성 보안을 위해 주방가구 측판넬에 방열판이 설치될 수 있음
- 평면구조에 따라 아트월 설치 위치 및 길이, 시공디테일, 조명의 설치 위치 및 길이는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의 디테일, 수납공간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일부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세대 천장고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목창호의 사이즈, 폭 등은 타입, 천장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현관중문의 사이즈, 열림 폭 등은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타입에 따라 현관 디딤판의 폭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면적은 같은 평형대,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하므로 제공되는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해 일부 주동에는 침실 앞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며, 층별 지그재그로 설치되는 형태에 따라 세대 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음</li> <li>· 안방 앞 발코니 분합벽체의 단열재는 시공성, 마감품질 확보를 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변경 및 관련 인허가 또는 인증의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li> <li>· 후드 사양에 따라 주방가구 상부장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 등의 이유로 일부 상부장 깊이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평면 계획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에는 배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li> </ul>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 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li> <li>· 외부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 외벽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됨. 단, 실외기실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 설치되지 않음</li> <li>·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개폐 및 채광이 어려울 수 있음</li> <li>· 실외기 공간/하향식 피난시설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 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그릴 설치 부분의 난간턱, 수벽의 높이 및 그릴의 재질,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내부 마감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li> <li>·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및 선출통 등이 설치되지 않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출통, 환기구, 바닥차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 공간/하향식 피난시설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의 유효폭이 줄어들 수 있음</li> <li>· 일부 발코니에는 입면 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시공 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오픈형 발코니는 외부 사시를 설치할 수 없음</li> <li>· 건축법규에 따라 각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최하층, 2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는 미설치됨)</li> <li>· 침실 등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설치공간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ul>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 마감재의 변경에 따라 세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유리 종류, 하드웨어, 창틀 재질, 크기, 색상, 난간대 재질/높이 등은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 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시행자” 의사결정에 따라 창호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동주택에는 입면분할 창호/유리난간통창호 적용으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계양대는 설치되지 않으며, 국기계양대는 각 동 출입구에 1개소씩 설치 예정으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li> <li>·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현관문의 열림방향이 다를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PL창호는 견본 제품이며, 본 공사 시 동등 사양의 PL창호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 시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음</li> <li>· 엘리베이터홀 창 중 층당 1개소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로 설치되고, 창호가 2개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창은 고정형 창으로 설치됨</li> <li>· 계단실 창은 고정형으로 설치되며, 환기를 위해 코아별로 창호사이즈를 고려하여 일부 오픈형(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일부 최상층 세대(142세대) 안방 앞 발코니에는 미니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미니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난간형 창호 타입이 적용됨</li> </ul>
전기 /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li> <li>· 보일러 점검을 위해 세탁기, 건조기 등을 이동해야 할 수 있음</li> <li>· 세대 1~3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li> <li>· 식탁등의 경우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식탁 배치 후 그 상부에 설치됨</li> <li>·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및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제품 구매 후 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기간은 변경 또는 미제공될 수 있음 (*래미안 IoT 플랫폼은 앱을 통해 홈페이지와 연계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전/포털/이통사의 AI스피커/앱으로 IoT 서비스를 제공)</li> <li>·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성능 개선 또는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옵션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층 세대의 전기·설비 배관/배선은 이중천장 내 노출 시공됨</li> <li>· 전기레인지 설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레인지 설치를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li> <li>·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li> <li>·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li> <li>·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 (에어컨, 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일부세대 현관문은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li> <li>· 욕실 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며, 욕실1/욕실2 배관 길이에 따라 가동소음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계약 내용(기본 혹은 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은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델이며, 해당 모델 단종 시에는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됨. 또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은 세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li> <li>·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등급은 1등급이며, 실별 인출구 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준에 맞추어 설치됨</li> <li>·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저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욕실 배관 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됨 (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 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li> <li>·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일부 아파트 등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방 랜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고 랜지후드 덕트커버에 자동식 소화기용 전기차단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덕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랜지후드의 위치에 따라 가동 시 소음, 진동이 침실로 전달될 수 있음</li> <li>· 랜지후드 설치 위치에 환기를 위한 설비 배관이 설치되며, 그에 따라 수납공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li> <li>·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용 가스차단기 및 전기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위치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실 루버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탁실 및 발코니 천장에 설비배관(욕실/주방배기)이 노출될 수 있고, 단천장이 시공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세탁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기본제공 또는 유상)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 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비용이 발생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형)이 전실 제공됨 (단, 84타입 이하 세대는 주방을 제외한 전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대별/평형별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공기청정형)은 유상옵션이며, 설치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용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li> <li>·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시공 개소 및 위치는 세대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제어기능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기본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외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할 시 별도의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연결할 경우 A/S가 불가능함</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임</li> </ul>
---

■ 사이버 모델하우스 : 래미안 라그란데 홈페이지(<https://www.raemian.co.kr>)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민로 17 래미안갤러리 3층

■ 분양문의 : 02-407-306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